

국토교통부공고 제2023-1591호

「수도권정비위원회 운영규정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12월 15일

국토교통부장관

## 「수도권정비위원회 운영규정」 일부개정안 행정예고

### 1. 개정이유

수도권정비위원회는 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에 따라 수도권에서 실시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인구집중유발효과 등을 심의하고 있으나, 현행 규정에는 심의시기가 명시되지 않아 사업자 혼선 및 심의 절차 지연 소지가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각 개발사업의 심의 시기를 명확히 제시하려는 것임. 또한, 하나의 시·군·구가 동일 유형의 다수 사업을 위원회에 상정하는 경우 통합 심의를 통해 행정 부담을 줄이고, 광역적 도시계획과의 정합성 및 난개발 방지방안 등 중점 심의 내용을 사업자 및 시·군·구 등에 미리 알려주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하나의 시·군·구가 동일 사업유형에 대하여 여러 의안을 상정하는 경우 의안을 통합하여 작성 및 심의 요청할 수 있도록 함(안 제2조제2항 신설)
- 나. 심의요청자 및 사업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 유형별 의안 심의요청 시기를 명확히 규정함(안 제2조제4항 및 별표4 신설)
- 다. 공무원인 위원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, 이 경우 회의 개최 및 의결 정족수를 산정할 때 출석한 것으로 봄(안 제6조제1항 및 제2항 신설)
- 라.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시 도시계획과의 정합성 및 난개발 방지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심의 내용 일부를 변경함 (안 제10조 신설)

## 3. 의견 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(참조 : 수도권정책과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행정예고문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(<http://molit.go.kr> > 정책자료 > 법령정보 > 입법예고·행정예고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### 가. 의견서 제출

- 의견 제출자의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),

주소 및 전화번호

-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

개 정 안	수 정 안	사 유(검토의견)

나. 보내실 곳

- 주소 : (우)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(정부세종청사 6동)  
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수도권정책과
- 전화 : 044-201-3657 / 팩스 : 044-201-5562
- 이메일 : star7moon@korea.kr